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7백만 명이 넘는 이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운동조직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9 국제앰네스티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따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4.0 국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legalcode>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 내 허가 안내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amnesty.or.kr

국제앰네스티 이외의 저작권자가 표시된 자료의 경우 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습니다.

2019년 초판 발행

문서번호: ASA 25/0529/2019
원문언어: 영어

amnesty.org
amnesty.or.kr



표지그림: 침묵 속 군 복무 중인 LGBTI 군인들
일러스트 제작: 조진주 ©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목차

요약	6
주요 권고	9
연구방법	11
1.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12
1.1 징병제	14
1.2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의 범죄화	19
1.3 군대 내의 LGBTI 인권 보호	23
2. 군대 안팎에서의 학대와 괴롭힘	25
2.1 사생활 침해	26
2.2 폭력과 차별	31
2.3 위계와 불처벌	36
2.4 해로운 격리조치와 정신건강	40
3.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 따른 LGBTI 인권	45
3.1 평등권 및 차별 받지 않을 권리	45
3.2 사생활권	47
3.3 신체적 및 정신적 불가침성에 대한 권리와 자기결정권	48
3.4 건강권	49
3.5 성과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타파할 국가의 의무	50
4. 결론 및 권고	51

용어

용어	설명
시스젠더	출생 시 지정된 성에 따른 관습적 기대와 자신의 성별 표현 혹은 성별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성별	주로 생물학적 성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된 특징.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변화시킬 수도, 변화할 수도 있다. 기존의 성별 규범에 ‘어울리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은 낙인, 차별적 관행,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성별확정치료	트랜스젠더가 받고자 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적 또는 비의료적 치료. 안면수술, 가슴수술, 성기 또는 생식선 수술과 같은 성 또는 성별 재지정 수술, 호르몬요법 등이 있으며, (자발적) 불임시술이 포함될 수 있다.
성별 표현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 옷, 화장, 말투, 특징적 행동, 수술적 치료, 호르몬요법 등을 포함할 수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성별정체성	스스로가 깊이 느끼는 내면적, 개인적 성별 경험을 일컬으며 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포함한다. 출생 시 지정된 성과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별 표시	여권이나 신분증과 같은 공식 문서에 표기되는 성별 표시. ‘남/녀’와 같이 명시적인 방식, ‘미스터(Mr)/미즈(Ms)’와 같이 성별에 따른 호칭, 성별에 따른 지시대명사, 특정 숫자로 남성 및 여성을 표현하는 방식(한국의 경우) 등이 있다.
인터섹스	성기, 생식선, 염색체, 호르몬의 특징이 성/재생산에 관한 신체구조의 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포괄적 용어.

인터섹스의 유형에는 여러 형태와 다양한 특징이 포함될 수 있다. 이밖에도 성징의 다양성을 뜻하는 표현은 '인터섹스 신체를 가진(intersex-bodied)', '인터섹스드(intersexed)', '인터섹슈얼리티(intersexuality)' 등으로 다양하다.

LGBTI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병무청	한국에서 군인의 징집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논바이너리	성별정체성이 완전히 남성도, 완전히 여성도 아닌 사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별, 남성과 여성을 넘어서는 성별, 남성과 여성을 오가는 성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성징	생물학적 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기관. 1 차 성징과 2 차 성징으로 나뉜다.
성적지향	다른 성별, 같은 성별이나 복수의 성별에 대해 감정적, 정서적, 성적으로 깊은 끌림을 느끼며,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개인의 지향성.

요약

“군형법 92 조의 6 은 누구를 증오하고 증오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군복무를 마친 LGBTI 활동가 ‘이소’

2017 년 5 월, 소셜미디어에서는 남성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군형법 제 92 조의 6 을 위반한 혐의로 군인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급속히 퍼졌다. 군 수사단의 조사 이후 총 20 명 이상의 군인들이 기소되었다. ‘A 대위’로 알려진 군인에게는 징역 6 개월, 집행유예 1 년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군형법 제 92 조의 6 을 위반한 남성 군인들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조사는 많은 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현역 군인들은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단지 게이 남성으로 보이기만 해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진행한 전역자 게이 남성은 당시 현역 복무 중이었다. 그는 군대 내 발간물에서 수사에 대한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군형법 제 92 조의 6 을 적용한 적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21 개월 이상 군복무를 수행해야 하며, 현재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인의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없지만 군형법 제 92 조의 6 ‘추행’ 조항은 군대 내 남성 간 성적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2 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보고서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한 직·간접적 결과로 군인들이 어떠한 차별, 위협, 폭력, 고립, 불처벌을 경험하고 있는지 밝힌다. 또한 군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억압할 때,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군인들이 겪는 고통의 양상을 조명한다.

첨록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국제앰네스티

한국에서 남성 간 성관계의 범죄화는 1962 년 제정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유엔과 여러 국가들은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2002 년, 2011 년, 2016 년 각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2017 년 2 월 인천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복수의 사건을 새롭게 심리 중이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임에도 해군은 2018 년 말 군형법 제 92 조의 6 위반 여부에 대한 또 다른 조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한국의 군형법은 부대 안인지, 혹은 근무시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남성 간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군인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용인한다. 예를 들어 2017 년 인천지방법원이 담당한 사건의 경우, 현역 남성 군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범죄화는 게이 남성, 양성애자 남성, 트랜스젠더 여성, 논바이너리 등 기존의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군인들이 지휘관이나 동료 군인들로부터 따돌림, 괴롭힘, 차별, 폭력을 겪지 않고 의무적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이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에 참여한 현역 군인 및 전역자들에 따르면 병사들은 흔히 군복무 중에 자신의 성적지향을 숨긴다. 그럼에도 인터뷰 참여자 일부는 자신이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하기 원하며 군대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하 'LGBTI')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대의 권력구조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남성 및 여성 피해자들이 특히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군인이 저지른 폭력을 신고하기 어렵게 만든다. 과거 군복무를 한 게이 남성 김도훈은 “결국 권력과 서열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후임을 괴롭힙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권력관계로 인해 학대를 신고하기는 훨씬 어렵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 년 한국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군대에서 다수의 성적, 신체적, 언어적 학대가 발생하고, 그 중 소수만이 기록 및 기소된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군대 내의 권력관계로 인해 실제로 자신의 상급자를 신고하기 어려웠으며, 강간 등 성폭력 생존자들이 군형법 제 92 조의 6 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더욱 주저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군 당국이 해당 성행위를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생존자들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시민단체에 따르면 실제 처벌된 사례도 있다.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고 기소와 선고로써 이를 집행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성인은 사생활권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에 따라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기소와 징역형 선고는 범죄화로 인해 게이 혹은 게이로 여겨지는 남성이 겪는 피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LGBTI 는 만연한 차별에 직면하며 많은 경우가 가족에게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숨긴다고 증언했다. 한국의 법률과 사법부는 동성 커플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기반으로 개인의 성적지향을 바꾸려는 ‘전환 치료’가 흔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한 경험자의 증언이다.

범죄화는 사회의 작은 부분인 군대에만 적용되지만 인구의 절반 가량이 청년기에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범죄화의 영향력은 매우 크게 작용한다. 범죄화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따른 차별을 용인하고 심지어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여러 현역 군인 및 전역자들은 이를 해롭다고 여긴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군형법을 군대 안팎에서 LGBTI 를 타겟으로 삼아도 좋다는 암묵적 승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차별과 괴롭힘은 LGBTI 권리를 지지하는 단체와 행사까지 그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위한 인터뷰 중 여러 게이 남성은 자신들이 군대에서 성적지향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폭력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고, 따라서 인터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는 군복무 중에 농담과 장난의 대상이 되었던 경험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인터뷰가 시작되자 이들이 털어놓은 경험은 단순히 ‘농담’으로 치부될 수 없는 학대와 폭력이었다. 이는 게이 남성들이 생존 기제의 작동에 따라 학대에 둔감해진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LGBTI 를 향한 만연한 차별과 적대적인 환경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크게 주저하게 된다. 이 보고서에는 현역 군인 및 전역자들의 증언이 제한적으로 담겨 있다. 이는 군대의 전체적 경향에 대한 폭넓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함이 아니다.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 LGBTI 가 군대 안팎에서 인권을 향유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구체적 사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많은 인터뷰 참여자들은 ‘충분히 남자답지 않음’에 대한 일종의 처벌로써 게이 또는 게이로 여겨지는 남성에게 대한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군인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실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때문만이

아니라 ‘여자 같은’ 걸음걸이, 하얀 피부, 높은 톤의 목소리 등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별 표현이나 외모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이 군인들은 군대에서 심각한 폭력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군 당국에 의해 막사나 정신 건강 치료시설에 고립되기도 한다.

군형법은 또한 게이, 양성애자 혹은 그외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할 자유, 연애할 자유, 성적 만족을 추구할 자유를 부정한다. 한 전역자는 이를 “숨막히는 분위기”라고 표현한다.

주요 권고

대한민국 정부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함으로써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평등권,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화를 통해 남성 간의 성관계를 막을 수는 없다. 또한 비범죄화를 통해 차별과 학대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범죄화는 군대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LGBTI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인 첫걸음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군형법 제 92 조의 6 폐지와 더불어 LGBTI의 권리를 보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등 다른 법과 정책에 있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현역 군인 및 전역자들은 또한 군이 LGBTI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문화를 바꾸기 위해 투명성 개선, 교육, 새로운 정책 도입 등 더욱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요 권고

-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 92 조의 6 을 폐지할 것
- 군대 내 LGBTI 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온당한 재판 회부 등의 책임을 물을 것
-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이유로 군인들을 조사, 구금, 기소하는 행위를 즉시 무조건 중단할 것
- 동성 간 성적 행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 기소, 군 복무부적합판정 등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 LGBTI 를 포함해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폭력을 수사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것. 모든 군인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비밀과 안전이 보장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수사관의 권한과 접근을 보장할 것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 민족, 성별, 실제 혹은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차별, 적대,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옹호행위와 폭력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할 것

감사의 말

국제앰네스티는 LGBTI 를 둘러싼 적대적인 환경과 고통스러운 개인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준 현역 군인, 전역자, 예비입영자, LGBTI 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또한 자신의 연구 및 활동 결과를 국제앰네스티와 공유해준 여러 LGBTI 단체, NGO, 학자, 법률가 등에게도 감사드린다. 이번 연구가 온전히 진행되기 위해 한국어-영어 통번역이 중요했던 만큼, 헌신적으로 임해준 통역사, 번역사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2018 년 9 월 20 일, 서울의 트랜스젠더 활동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보고서의 작성에 기여한 그는 사려 깊고 친절한 사람이었으며, 장래가 밝은 활동가였다.

그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부터 길거리에서 쏘아지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역시 커다란 두려움을 느꼈다. 모두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에 관계 없이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는 이 활동가 같은 트랜스젠더들이 더 이상 적대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센터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 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성소수자자살예방프로젝트 마음연결은 48 시간 내에 응답하는 온라인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게시판 링크주소 <http://chingusai.net/xo/online> 상담에 대한 문의는 ☎02-745-7942 (오전 10 시~오후 7 시)에서 가능하다.

연구방법

이 보고서는 2018 년 6~7 월, 2019 년 5 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한국에서 진행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조사팀은 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긴밀히 협력했다.

조사관은 현역 군인, 전역자, 예비 입영자 21 명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중 14 명은 자신이 인터뷰 시점이나 군복무 당시를 기준으로 게이 남성이라고 밝혔다. 다른 이들은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 양성애자,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논바이너리, 퀴어, 팬섹슈얼이라고 밝혔다.

인터뷰는 대면 인터뷰 또는 전화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통역과 함께 영어 및 한국어가 사용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서울, 부산, 대구에 거주했다. 일부는 LGBTI 운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었고, LGBTI 단체와 연관이 없고 군대 내의 차별, 동성애 혐오 또는 트랜스젠더 혐오에 관한 경험을 타인에게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는 이들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외에도 23 명이 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참여자는 서울, 대구, 전주, 제주에서 활동하는 LGBTI 단체의 대표 및 활동가, 학자, 전 군사법원 판사를 포함한 법률가 등이었다.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역시 포함되었다. 국방부, 병무청에 대한 서면 질의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가 더해졌다. 2019 년 5 월 국방부가 보낸 답변이 본 보고서에 반영되었고, 발간 전 국방부에 그 내용이 공유되었다.

인터뷰 참여자 중 신원을 밝히지 않기를 희망한 이들의 이름과 신상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비공개 처리되었으며, 가명은 인용부호로 표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인용된 이들은 대부분 직접 선택한 가명, 성을 제외한 이름, LGBTI 운동에서 사용하는 활동명으로 언급되며, 일부는 본명을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름의 표기는 인터뷰 참여자 본인이 선호하는 영문 철자법을 따랐고,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성을 뒤에, 두 글자 이름은 하이픈(-)과 함께 적었다. 인터뷰 참여자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표현하는 용어는 본인의 선호를 따랐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확한 군복무 연도, 부대, 지역 등 세부사항은 생략되었다.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은 인터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지, 그리고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인터뷰에서 참여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표시했으며, 원치 않을 경우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해도 된다는 설명이 주어졌다.

1.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국가는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외모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군복무를 한 트랜스젠더 여성 박에디

한국에서 LGBTI는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LGBTI 정체성, 문화 및 경험을 기념하기 위해 퀴어문화축제 같은 대중행사가 열렸고 2018년 5월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한국 최초의 드래퍼레이드도 그 중 하나였다.¹ 드래퍼레이드에서 수십 명의 드래퀸과 드래킹(다른 성별의 복장을 하는 남성과 여성)은 LGBTI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행진했다.

한국 형법상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결의안’ 채택에 2011년, 2014년, 2016년 모두 찬성했다.²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보낸 서신에서 한국에서는 헌법에 의해 평등권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또한 2001년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명시적으로 금지된다고 덧붙였다.³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는 성별정체성 관련 보호조치가 부재하며, 이 법의 금지규정 외에 필요한 차별금지항목을 모두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법률과 사법부는 동성 커플을 인정하지 않는다.⁴

‘동성애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기반으로 개인의

¹ “한국 최초의 드래퍼레이드, 퀴어 가시화에 성공하다(South Korea’s First Drag Parade Was a Win for Queer Visibility)”, them.us, 2018. 6. 1, www.them.us/story/south-korea-drag-parade-seoul.

²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UN Doc. A/HRC/RES/32/2;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UN Doc. A/HRC/RES/17/19;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UN Doc. A/HRC/RES/27/32.

³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대한민국” 중 “부록: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신한 정보”(이하 “최종견해: 부록”), UN Doc. CCPR/C/KOR/CO/4/Add. 2017. 8. 15, 제3항.

⁴ “한국 법원, 영화감독의 동성결혼 청구 기각(South Korean court rejects film director’s same-sex marriage case)”, 가디언, 2016. 5. 25, www.theguardian.com/society/2016/may/25/south-korea-rejects-film-director-kim-jho-gwang-so-same-sex-marriage-case.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성적지향을 바꾸고자 하는 ‘전환치료’가 한국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⁵ 일례로 2013~2015 년 군대에서 복무한 게이 남성 ‘HS’는 고등학교 2 학년때 처음으로 부모에게 성적지향을 밝혔는데, 부모는 성적지향을 바꿀 목적으로 그를 전환치료를 등록시켰다.⁶ 그의 아버지는 “네가 게이라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라며 ‘HS’를 비난했다. ‘HS’는 ‘치료’된 척하기 위해 여성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한국의 LGBTI 대부분은 일상 속에서 만연한 차별을 겪으며, 농촌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이로 인해 많은 LGBTI 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성소수자부모모임 창립자 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LGBTI 에 대한 혐오가 강하기 때문에 자녀가 LGBTI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아들이 게이란 사실을 밝혔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⁷

대한민국 군형법 제 92 조의 6 ‘추행’ 조항에 따라 남성 간 성적 행위는 2 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군형법은 차별을 제도화함으로써 LGBTI 에 대한 체계적 낙인을 강화한다.

LGBTI 커뮤니티의 가시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LGBTI 권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서울, 대구 등 대도시와 남서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서는 대다수가 보수적 교회 신도들로 구성된 잘 조직된 시위대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일부 도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 금지사유에서 제외시켰다.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한국의 법적, 제도적 인권 체계의 약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한 충청남도의회의 최근 결정, 다른 시도의 인권 조례를 폐지하라는 일부 종교단체의 요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금지항목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⁸

LGBTI 의 권리를 옹호하는 인권변호사 및 연구자로 구성된 SOGI 법정책연구회는 2019 년 5 월 16 일 ‘2018 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회는 보고서에서 국제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인터섹스연합(ILGA)의 기준에 따라 2017 년 이래 한국의 LGBTI 인권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⁵ 1990 년 승인된 「제 11 차 개정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의 최신판은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를 “청소년기와 성년기의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of Adolescence and Adulthood)”로 변경하였으며, 더 이상 이를 정신장애로 분류하지 않는다.

⁶ 국제엠네스티의 ‘HS’ 인터뷰(증언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 사용), 2018. 7.

⁷ 국제엠네스티의 지인 인터뷰, 2018. 6.

⁸ 빅토르 마드리갈-볼로즈(Victor Madrigal-Borloz)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2018 년 4 월 5 일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서신”, www.ohchr.org/Documents/Issues/SexualOrientation/Legislation/OL-KOR-1-2018.pdf.

참고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부정적 추세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2007~2011 년과 2012~2016 년 제 1, 2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에는 LGBTI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8~2022 년 제 3 차 NAP 에서는 그 내용이 삭제된 사실이 보고서에 언급되었다.⁹

1.1 징병제

한국전쟁(1950~1953 년)에서의 적대행위는 정전협정으로 종결되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한국)은 아직 전쟁 상태에 있다. 휴전 이후 수십 년 동안 긴장 관계의 고조와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한국은 핵,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 극복을 군사적 목표로 삼았다.¹⁰

국방백서에 의하면 2018 년 기준 한국의 상비군은 약 59 만 9,000 명이며, 2022 년까지 50 만 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다.¹¹ 그러나 2018 년 총 국방예산은 43 조 1,000 억원(384 억 달러)으로 “북한을 상대로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전년대비 6.9% 증가했다.¹²

18~35 세의 모든 남성은 최소 21 개월간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¹³ 징집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공인 신분증에 기재된 성별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공식적으로 성별정정을 하지 않은 시스젠더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은 징집대상이다.

반면 시스젠더 여성은 자원 입대를 선택할 수 있다.¹⁴ 국방부에 따르면 2017 년 기준 한국의 여성 군인 수는 1 만 명을 넘어섰다.¹⁵ 현재 장교와 부사관을 통틀어 여성의 비율은 10% 미만이다.¹⁶ 당국이 성별정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별확정수술을 마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트랜스젠더 남성은 여성으로

⁹ 박익래, “한국 성소수자 인권지수 11.7%…1 년 전보다 소폭 하락”, 연합뉴스, 2019. 5. 16, www.yna.co.kr/view/AKR20190516149500004.

¹⁰ 국방부, “45 대 국방부장관 취임사”, 2018. 8. 21,

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O_47210&boardSeq=O_173738&titleId=null&siteId=mndEN&id=mndEN_010102000000.

¹¹ 59 만 9,000 명은 육군 46 만 4,000 명, 해군 7 만명(해병 2 만 9,000 명 포함), 공군 6 만 5,000 명을 포함한 수치다. 국방부, 『2018 국방백서』, 2018. 12, 87 쪽, www.mnd.go.kr/user/mnd/upload/pblicitn/PBLICTNEBOOK_201901160236460390.pdf; 이민형, “한국, 군 복무기간 단축(S. Korea shortens military service)”, 코리아타임즈, 2018. 9. 4, www.koreatimes.co.kr/www/nation/2018/09/356_255035.html.

¹² “한국, 2018 년 국방예산 6.9% 증액 예정(S. Korea's defense budget to rise 6.9 pct in 2018)”, 연합뉴스, 2018. 8. 28, english.yonhapnews.co.kr/news/2017/08/28/0200000000AEN20170828013400315.html.

¹³ 병역법 제 18 조(현역의 복무). 그러나 2018 년 9 월 정부는 2020 년까지 육군 복무기간을 18 개월로 줄이는 복무기간 단축(안)을 승인했다. 다만 해군, 공군, 해병대는 여기서 제외됐다. “한국, 군복무기간 단축(S. Korea shortens military service)”, 코리아타임즈, 2018. 9. 4, www.koreatimes.co.kr/www/nation/2018/09/356_255035.html.

¹⁴ 병역법 제 3 조(병역의무).

¹⁵ 각 군별로 육군 6,915 명, 해군 1,264 명, 공군 1,694 명, 해병대 390 명. 서울안보대화, 국방부, 2017. 1. 26,

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1&boardId=O_47261&boardSeq=O_158869&titleId=null&siteId=mndEN&id=mndEN_030100000000.

¹⁶ 국방부는 2015 년 전체 장교 중 여성 비율을 7%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전체 부사관의 여성 비율 5% 목표 또한 3 년 조기 달성 예정으로 2017 년으로 달성기한이 단축되었다. 서울안보대화, 국방부, 2017. 1. 26, 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1&boardId=O_47261&boardSeq=O_158869&titleId=null&siteId=mndEN&id=mndEN_030100000000.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분류되어 징집되지 않는다. 이러한 트랜스젠더 남성은 자원 입대 또한 할 수 없다.

LGBTI와 병역면제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군복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¹⁷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¹⁸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에 참여한 군인 중 일부는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전산 상의 설문조사에서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신체등급은 병역법에 의거하여 신체검사 때 수집된 정보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들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¹⁹

국제앰네스티의 인터뷰 참여자 일부는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들, 혹은 전역조치가 가능하도록 ‘부적합’ 판정을 받아들이거나 ‘부적합’한 것처럼 행동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역조치는 대부분 임시적인 것으로, 추후 군복무를 수행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입사지원서에는 전역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보고서를 위해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은 구직이 어려울 수 있다.²⁰

병역의무와 병역면제 여부는 공문서상 성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문서에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은 병역의무자에 해당된다. 성별확정치료를 받는 도중이거나 성별정정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병역의무는 치료의 진행 정도와 징집 과정에서 받은 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성주체성장애’²¹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102의3에 따라 병역판정기준의 신체 등급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¹⁷ 병역법 제 11조 제 1항.

¹⁸ 병역법 제 11조 제 3항.

¹⁹ 병역법 제 12조.

²⁰ 국제앰네스티,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Index : ASA 25/1512/2015.

²¹ ICD-11의 ‘정신건강’ 범주에서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는 삭제된다. 세계보건기구, “ICD-11: 우리의 삶과 죽음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질병 분류(Classifying disease to map the way we live and die)”, 2018. 6. 18, www.who.int/health-topics/international-classification-of-diseases.

나. 정도(6 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 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다.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²²

병무청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성별정체성을 핑계로 삼는다고 주장하며 병역 기피죄로 몇 차례 고발한 바 있다. SOGI 법정책연구회에 따르면 이 트랜스젠더 여성들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병역은 면제되었다.²³ 그러나 한국 LGBTI 단체들의 기록에 의하면 적법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고환절제술(고환제거수술)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별확정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사례도 있다.²⁴

병역의무가 공문서상 성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남성 또한 신분증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한 경우 징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별 정체성을 법적으로 정정한 트랜스젠더 남성은 ‘신체 건강한 남성’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제 2 국민역’에 배정된다. 일부 군복무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남성이 있음에도 군대는 트랜스젠더 남성을 ‘장애가 있고 기능이 손상된 사람’으로 병역에 부적합하다고 간주한다.²⁵

나아가 성별확정치료를 받았으나 공식적으로 성별정정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병역이 면제되며, 직업군인으로 자원 입대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별정정에 필요한 성별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은 여성으로 분류된다.

한국 내 인터섹스는 군대와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소외되기 때문에 관련 처우를 기록하기 쉽지 않다. 군대는 징집병이 시스젠더 이성애 남성이라는 가정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성정에 기반한 차이가 간과될 수 있다.

성별정정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대법원은 이를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 관련 결정은

²² 국방부령 제 968 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8. 9. 17 일부개정), bit.ly/2BF8fLv.

²³ SOGI 법정책연구회, 「2016 년 연례보고서」, 제 7 절(군대), annual.sogilaw.org/review/review_2016_en/1900.

²⁴ SOGI 법정책연구회, 「2014 년 연례보고서」, annual.sogilaw.org/review/review_2014_en/509.

²⁵ 이호림, 티모시 깃젠(Timothy Gitzen), 「성/성별 불안정: 트랜스젠더의 신체와 한국 군대(Sex/Gender Insecurities: Trans Bodies and the South Korean Military)」, 『계간 트랜스젠더 연구(Transgender Studies Quarterly)』 5(3), 2018, 385 쪽.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지방법원 및 당국에 위임한다. 트랜스젠더는 공문서상 성별정정과 개명 모두 할 수 있으나 먼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²⁶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정부의 2017 년 답변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성별 재지정의 법적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한다.²⁷ 나아가 정부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2006 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제정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의 신청자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성 전환이 인정되기 위해 신청자는 “① 성전환수술을 받고, ②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출 것, ③ 미성년자녀가 없을 것, ④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일 것 등을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²⁸

또한 대법원 지침 제 3 조에는 성별재지정수술 의사의 소견서, 부모의 동의서 등 서면 첨부서류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대한 정부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이러한 법원의 관련 사무 지침은, 판사들이 판결을 함에 있어 참고하는 자료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성별정정 허가 여부는 담당 판사가 개개의 사례별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²⁹

일례로 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승인한 판례가 있다. 2013 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부성기재건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합법적인 성별정정을 인가했다.³⁰ 이후 2017 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위와 동일하게 외부성기재건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법적 성별정정을 인가했다.³¹

그러나 한국의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필요한 의료기술 모두를 원하지 않거나 건강상 이유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정신의학과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판사 개개인의 판결에 따라 성별이 반영된 문서를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³²

성별정정을 위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느낀다. 2017 년 기준 성기재건수술 비용은 여성 성별적합수술이 평균 1,514 만 8,000 원(1 만 2,750 달러), 남성

²⁶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 6 조(조사사항)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한다. 1. 신청인에 대한 한국 국적자로서 19 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 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²⁷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부록”, UN Doc. CCPR/C/KOR/CO/4/Add.1, 2017, 제 9 절.

²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부록”, UN Doc. CCPR/C/KOR/CO/4/Add.1, 2017, 제 9 절.

²⁹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부록”, UN Doc. CCPR/C/KOR/CO/4/Add.1, 2017, 제 9 절.

³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호파 4225, 2013.3.15; “한국의 트랜스젠더를 위한 기념비적 판결(Landmark legal ruling for South Korean transgenders)”, 한겨레 영문판, 2013. 3. 16, 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578323.html.

³¹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 호가 302, 2017. 2. 14; SOGI 법정책연구회, 「2017 년 한국 LGBTI 인권 상황」, 2018. 7. 14, 122 쪽.

³²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HIV 상황에 관한 한국의 권리침해」, 2017. 3, 17 쪽.

첨록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성별적합수술이 평균 2,057 만 1,000 원(1 만 7,300 달러)이었다.³³ 대법원 지침의 '미성년 자녀가 없는 미혼자'라는 요건은 기혼자의 경우 공식 성별정정을 위해 배우자와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자녀 양육권, 상속 재산, 국가 복지혜택 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한다.³⁴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 성별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별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평생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며 성별 정보가 포함됨) 13 자리 또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1'로 시작하는 번호는 남성, '2'로 시작하는 번호는 여성 성별을 표현하기 때문에 공인 신분증으로 성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³⁵

주민등록번호는 한국에서의 삶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주민등록번호는 구직활동이나 주택 구입을 위해 공문서를 취득하고 필수적 서비스를 활용할 때 필요하다.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과 사진이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모습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신분증이 위조되었다고 간주되기 쉽다. 예컨대 이로 인해 입사지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또한 출생시 성별과 현재 성별이 다른 것이 쉽게 파악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들은 필수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될 수 있다.³⁶

결국 한국에서 성별정정은 가능하지만 관련 요구조건은 트랜스젠더의 사생활권, 건강권, 가족 구성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맞게 신속성, 접근성, 투명성이 확보된 절차에 따라 성별정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³⁷ 국가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구조건을 폐지하고 이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반영된 공식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별정정은 정신의학과 진단, 의료 시술, 가족관계 혹은 일괄적인 나이 조건 등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안보라는 명분 아래 부정되는 기타 권리

한국 정부는 지속되는 전시상황을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부르며 인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조치를 정당화한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1948 년 제정되었으나 오늘날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³⁸

³³ 이혜민 외,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 관련 경험과 장벽: 정신과진단,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을 중심으로」,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제 40 호, 2018, 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6060334.

³⁴ 국제앰네스티, 「내가 누구인지는 국가가 결정한다(The state decides who I am)」, Index : EUR 01/001/2014, 16 쪽; 「나답게 살기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국의 트랜스젠더가 직면하는 성별적합치료의 걸림돌(I need my parents' consent to be myself: barriers to gender-affirming treatments for transgender people in China)」, Index : ASA 17/0269/2019.

³⁵ 정부는 2000 년부터 "3"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남성, "4"로 시작하는 번호는 여성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했다.

³⁶ "트랜스젠더에게 성 전환은 단순히 신체기관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다(For transgenders, sex change not about organs, but 'a question of life and death')", 한겨레 영문판, 2013. 5. 23, 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579384.html.

³⁷ 트랜스젠더 유럽(Transgender Europe), 「인권과 성별정체성: 우수사례 모음집(Human Rights and Gender Identity: Best Practice Catalogue)」, 2016. 12, tgeu.org/wp-content/uploads/2017/02/2.11-TGEU_BestPracticeCatalogue.pdf; 요그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 제 31 원칙 제 C 항, yogyakartaprinciples.org/wp-content/uploads/2017/11/A5_yogyakartaWEB-2.pdf.

³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Index : ASA 25/006/2012.

참목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국가보안법은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저해하며, 국가보안법 하에 ‘북한의 이념을 찬양한’ 죄로 많은 이들이 처벌 받았다.³⁹

한국과 북한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이지만 정부는 전시든 평시든 동일하게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비상사태일 때 일부 인권이 유예 또는 적용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국제인권 관련 법과 기준은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법에 모두 적용되며, 유예 사항은 명시적으로 공표되고 한시적이어야 한다.

자유권규약 제 18 조의 1 에 따른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또한 지속되는 전시 상황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해왔다.⁴⁰ 사상, 양심 및 종교상의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통상 징역 18 개월형을 선고받는다.⁴¹ 징역형 이외에도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도 발생한다.⁴² 성적지향 혹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되어 타국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한국인 남성들도 있으나 그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⁴³

2018 년 6 월 28 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의 부재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정부에 2019 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⁴⁴ 이 보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병역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여전히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2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의 범죄화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의 1 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과 반대로 군형법 제 92 조의 6 은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성과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남성은 계속 차별 받고 있다.⁴⁵

³⁹ 국제앰네스티, 「남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제한 지속되다」, Index : ASA 25/001/2015.

⁴⁰ 대한민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40 조에 의거한 제 4 차 정례보고서」, UN Doc. CCPR/C/KOR/4, 제 268-269 항.

⁴¹ 국제앰네스티,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Index : ASA 25/1512/2015.

⁴² 국제앰네스티,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Index : ASA 25/1512/2015.

⁴³ “고국의 차별 피해 외국에 망명 신청하는 한국인들(Fleeing discrimination at home, S. Koreans seek asylum abroad)”, 한겨레 영문판, 2014. 11. 7, 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610223.html.

⁴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8 년 6 월 29 일 대체복무제의 부재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정부에 2019 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 명령을 내렸다. “한국의 병역거부자,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South Koreans may no longer face jail if they refuse to serve in the military)”, CNN, 2018. 6. 29, edition.cnn.com/2018/06/29/asia/south-korea-military-service-intl/index.html.

⁴⁵ 2009 년 개정과 이로 인한 변호 변경 전에 '추행' 조항은 제 92 조의 5 에 명시되어 있었다.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이 조항은 1962 년 군형법이 제정된 이래 계속 존재했다. 이 조항과 관련된 가장 주요한 개정은 2009 년에 이뤄졌으며 처벌이 1 년 이하에서 2 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되었다.

이 조항은 개정되기 전에 ‘계간(鷄姦)’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간의 사전적 의미는 ‘닭 사이의 성행위’로, 남성 간의 항문성교를 뜻한다). ‘계간’이라는 단어가 남성 간 성적 행위를 비하하는 경멸적인 표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2013 년 ‘계간’은 ‘항문성교’로 대체되었다.⁴⁶

현재 제 92 조의 6 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 1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⁴⁷ 제 1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은 준사관, 부사관,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현역 혹은 예비역,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과 사관후보생 등 군인과 군인에 준하는 사람의 범주를 규정한다.⁴⁸

제 92 조의 6 은 성적 행위의 합의 여부, 동성 혹은 이성 사이의 행위였는지, 군부대 내에서 이뤄졌는지 혹은 군인이 비번 혹은 휴가 때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구분을 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듯 실제로 이 조항에 대한 정부의 해석은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포함하여 남성 간 성적 행위로 제한된다. 2016 년 ‘추행’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건의 요약 결정문은 이 조항을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한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한다고 밝힌다.⁴⁹

국방부는 제 92 조의 6 에 따라 조사 및 처벌된 군인의 성별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요청에 대해 2017 년 수사에 두 명의 여성이 연루되어 있었으나 군형법 추행죄(제 92 조의 6)에 의거하여 이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가 처벌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⁵⁰

한국 정부는 2017 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당시 제출한 보고서에서 군형법 제 92 조의 6 은 성적지향의 형사 처벌을 위한 조항이 아니며 막사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군령과 군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⁵¹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2 년, 2011 년, 2016 년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의 범죄화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범죄화에 반대하는 재판관의

⁴⁶ SOGI 법정책연구회, 「2015 년 한국 LGBTI 인권 상황」, 2016. 8. 19, annual.sogilaw.org/review/review_2015_en/1576

⁴⁷ 군형법 제 92 조의 6.

⁴⁸ 군형법 제 1 조 제 1 항에서 제 3 항.

⁴⁹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구 군형법 제 92 조의 5 중 ‘그 밖의 추행’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부분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결정 요약문”, 2012 헌바 258, 2016. 7. 28.

⁵⁰ 국제앰네스티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2019. 5. 29.

⁵¹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이사회 결의안 16/21 의 부속서 제 5 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대한민국」, UN Doc. A/HRC/WG.6/28/KOR/1, 2017. 9. 4.

첨록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수는 늘어나고 있다. 9 명의 재판관 중 2002 년 6 대 2 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2011 년과 2016 년에는 5 대 4 로 합헌 결정이 났다.⁵²

가장 최근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동성간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보았을 때, 그로 인하여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하여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 하여도 이는 앞서 살펴본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써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⁵³

2017 년 2 월 인천지방법원은 범죄화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인천지방법원은 군형법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⁵⁴ 이 보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제 92 조의 6 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아도 사회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데 일조한다. 이 조항은 스스로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칭하는 사람,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 혹은 스스로 정의한 성별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성별 혹은 성 ‘규범’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즉 그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사람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제 92 조의 6 은 개인 및 국가 행위자의 폭력 행사를 조장하고 이러한 폭력 행위에 대한 불처벌을 낳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⁵⁵

대한민국 군형법의 차별적 조항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이 보고서에 기술된 현역 군인 또는 전역자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은 단순히 특정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 이 법은 차별을 제도화하고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불이익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며 군대뿐만 아닌 사회 전체에서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상대로 한 폭력을 조장하고 정당화한다.

⁵²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01 헌바 70, 2002. 6. 27; 2008 헌가 21, 2011. 3. 31; 2012 헌바 258, 2016. 7. 28.

⁵³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12 헌바 258, 2016. 7. 28, 145-152 쪽(공식 영문본).

⁵⁴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4070, 2017. 2. 17.

⁵⁵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 사랑의 불법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동성 간 성적 행위 불법화(Africa: Making love a crime: Criminalization of same-sex conduct in Sub-Saharan Africa)」, Index : AFR 01/001/2013; 「몸의 정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의 범죄화에 관한 입문서(Body politics: A primer on criminalization of sexuality and reproduction)」, Index : POL 40/7763/2018.

첨록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강간과 책임성

군기 유지를 위해 제 92 조의 6 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의문스럽다. 군형법 제 92 조에는 이미 강간, 유사강간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조항이 존재하며 이러한 조항은 군인의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⁵⁶

일례로 강간을 처벌하는 제 9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 1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유사강간을 처벌하는 제 92 조의 2 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 1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제 92 조의 2 에서 규정된 행위 또한 강간이며 제 92 조의 금지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항에서 강간 및 유사강간에 대한 정의는 합의 여부가 아닌 물리적 혹은 폭력 사용을 전제로 정의되기 때문에 모든 강간 행위를 아우르지 못한다. 포괄적인 강간의 정의에는 신체 부위 혹은 사물을 합의 없이 성적인 성격으로 타인의 질, 항문, 구강에 넣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대한민국 군형법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⁵⁷

시민사회단체들은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전반적인 수위와 상급자를 신고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⁵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17 년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군대 내에서 성적인 행위를 포함한 폭력과 학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기소된 건은 적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⁵⁹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임 여군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장교 2 명에 대해 하급 군사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으나 2018 년 11 월 고등군사법원은 폭행 혹은 협박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⁶⁰ 제 92 조의 6 을 제외한 제 92 조에 명시된 범죄는 모든 성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성추행 혹은 강간죄로 기소할 수 있다.

⁵⁶ 군형법 제 92 조는 강간, 제 92 조의 2 는 유사강간 행위를 규율한다.

⁵⁷ 이스탄불협약 제 36 조 제 1 항 a 호; 또한 다음을 참조. 국제형사재판소, “범죄구성요건(Elements of Crimes)”, 2011. ‘범죄구성요건’ 중 1 번, 2 번은 제 7 조 제 1 항 g 호 1 목(8 쪽)에 따른 인류에 대한 범죄(강간) 및 제 8 조 제 2 항 b 호 (xxii)-1 목(28 쪽)과 제 8 조 제 2 항 e 호 (vi)-1 목(36-37 쪽)에 따른 국제 및 비국제 무력분쟁시 전쟁 범죄(강간)에 관한 것이다.

⁵⁸ 64 개 시민사회단체 연합,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한국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2017. 3. 20, 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AT%2fCSS%2fKOR%2f26966&Lang=en,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HIV 상황에 관한 한국의 권리침해」, 2017. 3. 17 쪽, 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AT%2fCSS%2fKOR%2f27029&Lang=en.

⁵⁹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 대한민국”, UN Doc. CAT/C/KOR/CO/3-5, 2017, 제 35 항.

⁶⁰ “고등군사법원, 강간 혐의 해군 장교 2 명에 무죄 선고(Two Navy officers acquitted of rape in High Military Court)”, 코리아헤럴드, 2018. 11. 20, www.koreaherald.com/view.php?ud=20181120000687.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1.3 군대 내의 LGBTI 인권 보호

2009 년에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는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라는 장이 있다. 본 장의 제 256 조는 “동성애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모욕·학대·성희롱·성폭력 등을 금지한다.”⁶¹ 또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지휘관이 강제로 병원에 입소·입원 조치하고, 채혈검사를 하거나, “그린캠프” 입소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나아가 2011 년 제정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는 병사와 관리요원을 위한 인권 교육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 훈령은 2017 년 1 월 18 일 개정되어 교육 주제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 년부터 ‘군대와 인권’이라는 교육과정에서는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군인권교관(중대장, 관리인력, 상급자 포함)을 위한 교육은 총 720 명을 대상으로 연 12 회 시행한다.⁶²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약칭 ‘희망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부대관리훈령이 개정되었지만 “군은 부대관리훈령에 동성애자의 인권보호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⁶³ 한가람 변호사는 게이 병사를 전역시킬 수 있는지 문의했던 한 군간부와의 최근 통화를 언급했다. 한가람 변호사는 그에게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군대 내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다른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 년 3 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당국은 2017 년 발표한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100 대 국정과제 중 ‘군인권보호관(군옴부즈맨)’ 설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⁶⁴ 또한 국방부 차원에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부적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작성 시점에 국회는 옴부즈맨 역할의 실행을 위한 조치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제앰네스티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군대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전화상담 서비스 등 상담센터 운영, 성평등 보장을 위한 업무범위 설정 그룹 구성, 학대 신고전화, 상담 채팅방, 민원전용 이메일, 피해자가 성폭행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는 2018 년 7 월 군인·군무원

⁶¹ 국방부훈령 제 2273 호 ‘부대관리훈령’(2019. 4. 4 일부개정), 제 256 조(차별금지).

⁶² 국제앰네스티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2019. 5. 29.

⁶³ 국제앰네스티의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 인터뷰, 2019. 5. 2.

⁶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의 후속조치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신한 정보”, UN Doc. CAT/C/KOR/CO/3-5/Add.1, 2019, 제 10-11 절.

첨록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으로 민원 보호를 의무화하고 징계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했다고 강조했다.⁶⁵

⁶⁵ 국제앰네스티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2019. 5. 29.

2. 군대 안팎에서의 학대와 괴롭힘

“한국의 게이 남성은 자신의 성적지향을 숨기는데 능숙합니다. 평생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군복무를 한 양성애자 남성 ‘김존’

인터뷰를 통해 군복무 경험을 공유한 게이 남성 중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직접적인 부당 대우를 피할 수 있었던 사람도 있고, 군복무 내내 폭력과 학대, 위협에 시달린 사람도 있다.

몇몇의 참여자는 인터뷰 중에 많은 게이 남성들이 자신의 성적지향을 비밀로 한 채 군복무를 잘 마치며,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구와 사적인 시간을 보낼지에 관한 개인의 선택이 범죄행위로 취급될 경우 공공에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군인들은 기소, 괴롭힘, 폭력, 고립, 차별, 낙인 등에 직면할 수 있다.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법이 다수의 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집행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를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규범’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성별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을 규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을 허용한다. 군인들은 성적지향에 대한 의심, 성적 행위에 대한 소문, 성별 표현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자의적으로 체포될 수 있다.

2009년 국방부가 제정한 부대관리훈령은 LGBTI에 대한 동등한 처우와 기타 차별금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무 중인 군인들은 여전히 이러한 조치가 불공평하고 미비하게 이행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으며, 군형법 92 조의 6을 근거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게이 군인들이 계속 군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2.1 사생활 침해

사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자아에 대한 관념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유권규약 제 17 조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이다. 성인 간 합의에 의한 개인적인 성적 행위는 ‘사생활’의 개념에 포함된다.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사생활권 침해이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에 대한 사법 당국의 사생활 침해를 허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가 성적 행위나 성별 표현을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개인의 사적 생활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다른 이들 역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된다. 이와 같은 사생활 침해는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및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다른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다.

군 당국은 2017 년 현역 군인 수십 명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의 군형법 제 92 조의 6 은 1960 년대부터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유례 없는 전방위 조사에 활용되어 군인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지고 나서야 많은 이들이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의 범죄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현역 군인 총 23 명이 군형법 제 92 조의 6 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다.⁶⁶ 그 중 10 건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상태이며, 그 외 몇 건은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이다. ‘A 대위’로 알려진 군인은 전역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체포되어 징역 6 개월, 집행유예 1 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까지 기소된 군인들 가운데 실제 복역한 이는 없으나, 아직 현역인 몇몇은 사건이 계류 중인 사이 진급에서 탈락하는 등 여러 불이익을 겪고 있다.⁶⁷

인권옹호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사에서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법이 동원되었다.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수사를 받는 군인에게 다른 게이 남성이 누구인지 지목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대화하라고 강요한 결과라며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의 대화방 화면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다.⁶⁸ 또한 군인권센터는 육군중앙수사단이 게이로 의심되는 군인 50 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들에게 연락처 상의 다른 게이 남성을 지목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불법적인 수색, 군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⁶⁹ 2019 년 3 월 군인권센터는 이와 별도로 2018 년 말부터 해군 3 명이 군형법 제 92 조의 6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⁷⁰

⁶⁶ 특별절차 긴급청원(Joint Urgent Appeal)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답변, 2018. 2. 2, KOR 2/2017, 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File?gld=33890.

⁶⁷ 서울에서 이루어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인터뷰, 2019. 5. 2.

⁶⁸ 군인권센터, “합정수사 및 장준규 육참총장 개입 정황 등 증거 자료 공개 브리핑”, 2017. 4. 17, mhrk.org/news/?no=3270.

⁶⁹ 군인권센터,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을 지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사퇴하라”, 2017. 4. 13, mhrk.org/news/?no=3257.

⁷⁰ 군인권센터,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폭로하자 ‘아웃팅 협박’”, 2019. 3. 12, mhrk.org/news/?no=6094&fbclid=IwAR3jxPM1g8A3CbOsEYDYWHgE3hlqCBYQs1BGvVkdYr2leH0_3CM_dtMeS8.

참목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군 당국의 2017 년 수사는 군형법 제 92 조의 6 이 존재하는 한, 설령 해당 조항이 일상적으로 혹은 자주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남성 간에 성관계를 가진 혹은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군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는 국제앰네스티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군형법 제 92 조의 6 의 적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2009~2018 년 기간 해당 조항에 의해 기소된 군인의 수는 대부분 연간 한자릿수에 머물렀다.⁷¹ 2011 년의 경우 13 명, 2012 년에는 14 명이 기소되었다. 그러나 2017 년 들어 기소 인원은 위에 언급한 23 명을 포함해 28 명으로 급증했으며, 2018 년에는 상반기에만 10 명이 기소되었다. 특정 연도에 기소된 군인의 수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증가한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2017 년에 수사에 관한 의도적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며, 군형법 제 92 조의 6 을 실제로 집행할지의 여부가 현재 군 인사의 개인적 결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⁷¹ 국제앰네스티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2019. 5. 29, 연도별 기소 인원은 2009 년과 2010 년 각각 2 명, 2011 년 13 명, 2012 년 14 명, 2013 년 3 명, 2014 년 4 명, 2015 년 6 명, 2016 년 8 명, 2017 년 28 명, 2018 년 6 월 30 일까지 10 명이다.

2016~2018 년 군대에서 복무한 전역장교 "김여준"의 사례

2017 년 봄, '김여준'은 육군 간부로 성공적으로 복무하고 있었다.⁷² 그는 2017 년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자신의 군 경력이 극적으로 변한 과정을 국제앰네스티에 설명했다.

저는 2016 년 임관하기 전 컴퓨터로 징병검사를 받을 때 '당신은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가?'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예'라고 답하면 불려가서 군복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들을 추가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선임 간부는 평소 부하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했는데, 저는 이것이 군대에서 흔한 일이고 성적지향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선임이 군생활을 하는 최고의 방법은 상관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상관이 카톨릭 신자이면 카톨릭 신자가 돼라"고 했습니다.

제 성적지향은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7 년 3 월, 대한민국 육군중앙수사단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착하니 방 안에 세 사람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어진 지 1 년이 넘는 전 애인 '준서'를 아는 지부터 물었습니다. '아니오'라고 답하자 수사관들은 소리치며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 하나가 말했습니다. "준서와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해보자." 수사관들은 준서의 지휘관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이미 핸드폰을 압수당한 '준서'는 지휘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준서의 지휘관에게도 아웃팅을 당했습니다. 준서는 수사관들에게 저와 아는 사이이며 연애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디지털 포렌식을 할 테니 제 전화기를 넘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수사관들은 "전화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할 것이고, 그러면 부대에서 너에 대해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며 더욱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디지털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⁷² 국제앰네스티의 '김여준' 인터뷰(증언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 사용), 2019. 5.

저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고 변호사인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약간만 협조하면 일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로 수사관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저는 육군중앙수사단에 준서와 연인 관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수사관들은 “어떤 체위로 관계를 가졌느냐,” “어디에 사정했느냐”와 같은 모욕적인 질문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제출했고, 그들은 제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직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제 전화기를 살펴보면서 연락처에 다른 동성애자가 있는지 말하라고, 이미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의 연락처는 모두 친구라고 답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입건되었고, 군 검사와 만난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는 만큼 형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군 검사가 “자신이 범죄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차마 그렇다고 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92 조의 6 위반을 인정했고, 기소는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이번 수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휘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징계를 유예시키겠다고 하였고, 저는 징계를 받지 않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2018 년에 군대를 떠난 뒤에도 수사의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인이었던 사람이 제 이름을 대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 2017 년에 수사 받은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는 모습을 본 뒤 저의 정체성이 폭로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군 당국은 마치 관음증 환자처럼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비밀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었습니다.



군인의 ‘아웃팅’

본인에 의지에 반하여 상대방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공개하는 ‘아웃팅’ 행위는 사생활권을 침해하며 차별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정부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하며, 해당 정보가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위해 국제앰네스티가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정부 관계자들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등 비전문적이며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2008 년부터 2009 년까지 군복무를 한 제람에 의하면, 제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한 부사관이 ‘도와줄테니 거리낌 없이 말해도 된다’며 다가왔다. 제람은 어려움을 부사관에게 말하며 자신의 성적지향을 밝혔다. 그러나 부사관은 제람과의 상담 기록지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두었다. “내가 게이라는 사실이 바로 다음 날부터 알려지기 시작해 곧 부대 전원이 알게 되었다.”고 그는 밝혔다.⁷³

2018 년 7 월 인터뷰 당시 현역이었던 ‘김명학’의 경우, 중대장이 ‘김명학’을 ‘아웃팅’하면서 동료부대원들에게 “‘김명학’이 게이인 것을 알고 있었나? ‘김명학’의 성적지향 때문에 불편하다면 다른 부대로 보내겠다”고 말했다.⁷⁴ 부대관리훈령 중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를 다루는 장의 제 255 조에 따라 다른 병사를 아웃팅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아웃팅’은 가족에게도 해당된다. 1996 년부터 1998 년까지 군복무를 한 게이 남성 김도훈은 그의 친구가 자신의 성적지향을 장교에게 밝힌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 장교는 친구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의 가족에게 사실을 알렸다. 친구가 강제 전역되어 집에 돌아온 후, 어머니는 일 년 동안 밥을 해주지 않았다. 김도훈은 이와 같은 일이 본인에게도 생길까 봐 걱정되었다고 말했다.⁷⁵

2.2 폭력과 차별

범죄화는 실제 혹은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허용한다. 또한 군 관계자와 일반 대중이 게이 또는 게이로 인식되는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불차별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 응한 여러 군인 및 NGO 관계자들은 게이 남성이 군대에서 적대적인 분위기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범죄화와 더불어, 한국의

⁷³ 국제앰네스티의 제람 인터뷰, 2018. 7.

⁷⁴ 국제앰네스티의 ‘김명학’ 인터뷰(증언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 사용), 2018. 7.

⁷⁵ 국제앰네스티의 김도훈 인터뷰, 2018. 7.

군대문화는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으며 LGBTI가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표현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이 실제 성적지향보다도 성별 규범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 모습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단지 섹슈얼리티 때문이 아니라 성별 규범을 벗어나고 한국 군대가 규정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도훈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상대적으로 여성스럽고 키가 작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장난 치는 것처럼 정말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제가 사회성이 조금이라도 부족했거나 의지가 더 약했더라면 아마 폭행도 당했을 것입니다.”⁷⁶

양성애자 남성 ‘김존’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군복무를 했으며 병역판정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가?’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냥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아니오’를 선택했다.

“‘그들(군대)에게 이런 정보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굳은 표정으로 군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려 했습니다.”⁷⁷

병사들은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극도로 남성적’이며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 ‘이소’는 국제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대는] 자기 자신을 지우고 맞춰야 하는 곳입니다.”⁷⁸

일례로 과거에 군복무를 한 트랜스젠더 여성 박에디는 훈련 때 목소리를 낮게 깔고 더 ‘남자답게’ 걸으라는 명령을 받았다.⁷⁹ 그녀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겪은 고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한 병사가 우산을 보여주면서 농담을 하다가 나를 보며 ‘내가 이걸 삽입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군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고 임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군복무 경험을 말한 게이 남성 일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서 직접적인 부당 대우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는 군 복무 중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성적지향의 공개

⁷⁶ 국제앰네스티의 김도훈 인터뷰, 2018. 7.

⁷⁷ ‘김존’ 인터뷰(증언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 사용), 2018. 7.

⁷⁸ 국제앰네스티의 ‘이소’ 인터뷰(증언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 사용), 2018. 7.

⁷⁹ 국제앰네스티의 박에디 인터뷰, 2018. 7.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여부와 무관하게 군복무 내내 학대와 폭력에 대한 위협으로 고통을 겪은 이들도 있다.

현역 군인 ‘김명학’의 사례

‘김명학’은 2018 년 7 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 당시 현역 군인이었다.⁸⁰ 그는 군대내에서의 동성애혐오적 경향, 원치 않는 ‘아웃팅’, 상관의 차별적인 발언 등에 대해 말했다.

군복무를 하는 동안 저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입대 전 신체검사 에서도, 이후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정기 건강검진에서 객관식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가? 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군대 내 상담사에게 저의 성적지향을 밝히고, 흔히 말하는 남성적인 스타일이 아니라서 군대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저는 ‘관심병사’로 분류되었습니다”.

나중에 군대 안에서만 발행되는 신문에서 2017 년 벌어진 수사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객관식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표기한 것 때문에 폭언이나 물리적인 폭행, 차별 대우에 시달린 적이 없음에도, 게이 남성으로서 필요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군형법 제 92 조의 6 에 근거해서 기소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특히 걱정시켰던 건 군대의 동성애혐오적 경향, 그리고 군 간부가 원한다면 법을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제 성적지향을 알고 있었던 후임이 저를 곤란하게 만들고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후임이 민간인인 제 애인의 번호를 알아내어 저인 척 하고서는 외부 발신이 금지된 군용 시설의 회선으로 전화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20 통이 넘게 보낸 겁니다. 놀라서 전화를 건 제 애인에게 그는 ‘더러운 새끼’라고 욕을 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애인의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걱정했던 제 애인은 문자메시지를 제가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모욕까지 듣자 분노했습니다.

이 통화 건에 대해 알게 된 중대장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을 쓰던 부대원에게 “‘김명학’이 게이인 것을 알고 있었나? ‘김명학’의 성적지향

⁸⁰ 국제앰네스티의 ‘김명학’ 인터뷰, 2018. 7.

때문에 불편하다면 ‘김명학’을 다른 부대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의 없이 저를 ‘아웃팅’했을 뿐만 아니라 게이에 대한 차별 발언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대응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장난을 친 후임이 응분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이 없었지만 마치 저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야 했습니다. 중대장은 저에게 그 후임이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고 했고, 다른 부대원들도 그 후임 편을 들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이 남성 ‘HS’는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성적지향을 숨겼다.

“제가 게이라는 것을 군대에서 알았다면 저는 끝났을 겁니다.”

그는 자대배치를 받았을 때 성적지향에 대한 질문을 반복해서 받았고, “게이나 트랜스젠더라면 전역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⁸¹ 처음에는 성적지향을 숨겼던 제람은 부대의 다른 병사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이유로 자신이 충분히 남자답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느꼈다.⁸²

인터뷰 참여자 중 최근 군복무를 한 이들은 LGBTI 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는 금지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간부들은 강의 중에 게이 남성과 게이 남성의 성행위를 모욕하는 성적 농담을 하기도 했다.

2018 년 4 월에 군복무를 마친 병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일 취침시간에 청취해야 했던 군법교육에서는 ‘동성애자도 어려움 없이 군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동성의 병사들이 성관계를 하여 처벌받았다’고 했습니다.”⁸³

‘이소’의 지휘관은 제 92 조의 6 을 언급하며 동성간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는 “이 부분이 무척이나 불편했습니다”라고 말했다.⁸⁴

⁸¹ 국제앰네스티의 ‘HS’ 인터뷰, 201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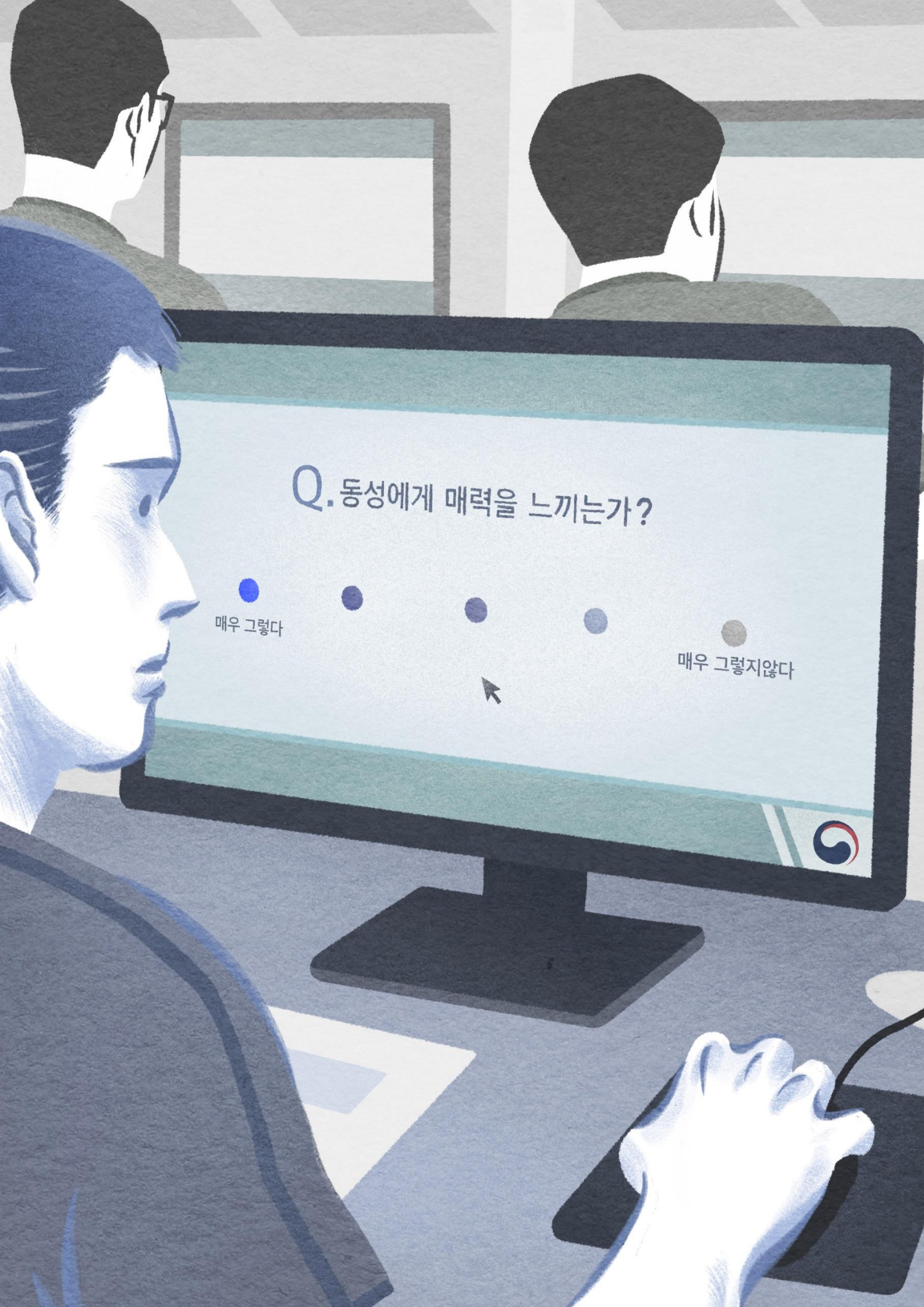
⁸² 국제앰네스티의 제람 인터뷰, 2018. 7.

⁸³ 국제앰네스티의 ‘카페인’ 인터뷰(증언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 사용), 2018. 4.

⁸⁴ 국제앰네스티의 ‘이소’ 인터뷰, 2018. 7.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Q.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가?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2.3 위계와 불처벌

“결국 권력과 서열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후임을 괴롭힙니다.”

과거 군복무를 한 게이 남성 김도훈

인터뷰 참여자들은 위계가 극도로 강조되는 군대 환경 속에서, 권력의 불균형이 학대와 괴롭힘의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권력관계는 군대 내에서 벌어진 학대를 신고하는 것 또한 더더욱 어렵게 만든다.

전역한 게이 남성 몇몇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적 학대를 당했으며 이에 대해 침묵하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가해자는 지휘관인 경우가 많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군복무를 한 게이 남성 ‘이성주’는 복무하는 동안 느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입대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부대 내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계급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압박하고 괴롭힐 수 있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무서웠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저에 대해, 그리고 제 성적지향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과 몇 달 동안 하루 24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⁸⁵

인터뷰 참여자 몇몇은 상급자들이 자신의 진급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를 하지 말라며 군인들을 위협했고, 이러한 위협은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2018년 7월에 군복무를 마친 게이 남성 ‘카이스’에 따르면 그의 상관은 부대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관계를 할려면 부대 내에서 하지 마라. 내 진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외부에서 몰래 하고 들키지 마라.”⁸⁶

인터뷰 참여자들은 위계적인 군대 문화로 인해 선임 병사 및 간부들이 온갖 형태의 따돌림, 괴롭힘, 폭력으로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군인들을 학대하고도

⁸⁵ 국제앰네스티의 ‘이성주’ 인터뷰(증언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 사용), 2018. 7.

⁸⁶ 국제앰네스티의 ‘카이스’ 인터뷰(증언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 사용), 2018. 7.

차별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게이 남성, 그리고 게이로 여겨지는 남성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군대 문화에 강제로 적응시키기 위해 ‘군기’를 잡아야 하는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2003~2004 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연구는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은 계급별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고 밝혔다.⁸⁷

⁸⁷ 권인숙 외, 「한국의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Sexual Violence among Men in the Military in South Korea)」, 『대인폭력 저널(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8), 2007, 1040 쪽.

예비역 ‘유’의 사례

약 10년 전에 군복무를 한 ‘유’는 ‘여성스러워’ 보이거나 군대의 전통적인 성별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자신도 경험했다고 증언한다.⁸⁸ 그는 언어적, 신체적 학대, 성폭행, 모욕, 폭력, 위협 등에 시달려 다른 병사 세 명과 함께 자해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저희 부대에는 ‘여성스럽다’고 여겨지는 병사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등병 아니면 일병이었는데, 선임병들이 세탁실이나 샤워실 같이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어떤 경우, 간부들이 야간근무 때 계급이 낮은 병사들을 인근 모텔로 불러서 강간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한 병사가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병사가 저항하자 선임병이었던 가해자는 그 병사를 심하게 폭행하기 시작했고 변기에 있는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며칠 뒤 학대를 당한 병사는 이 사건을 신고하기로 마음 먹고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임병은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네가 뭘데 남의 사적인 일에 끼어드냐?”고 물었습니다. “신고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때까지 패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세 시간 동안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학대 피해자와 구강 및 항문성교를 하라고 강요받았고, 선임병은 “여자 같은 남자랑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냐?” 등의 발언으로 조롱했습니다.

결국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간부들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다른 피해자를 ‘변태적 성관계’를 한 ‘더러운’ 사람들인 것처럼 폄하했습니다. 가해 선임병은 그 이후에도 그 밤 내내 제 동기를 껴안는 등 계속해서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다른 세 명의 병사는 학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보일러실에 가서 칼로 몸을 긋고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저희 네 명 모두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병사 세 명에게는 불명예제대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는 원래의 부대대로 복귀되었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병사를 지칭하는 ‘관심병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1개월간 군교도소에 보내졌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간부들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⁸⁸ 국제앰네스티의 ‘유’ 인터뷰(증언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 사용), 2018. 7.



2.4 해로운 격리조치와 정신건강

“군대에서 한 선임이 저에게 ‘너를 이 자리에서 총으로 쏘도 너의 죽음은 의문사로 덮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너희 가족이 받은 사망보상금은 군견보다도 못 할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군복무를 한 게이 남성 제람

인터뷰에 참여한 현역 군인 및 전역자들은 ‘관심병사’ 또는 ‘특별관심대상’이라는 표현과 그 사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단어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군인들을 선별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표현은 2015년 공식적으로 ‘배려병사’ 및 ‘도움병사’로 변경되었으나 인터뷰 참여자 일부는 예전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⁸⁹ 인터뷰 참여자들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관심병사’로 지목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이 LGBTI 병사들을 낙인 찍고 ‘그린캠프’라는 의료시설(군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병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군생활 전반에서 다른 병사들과 격리하는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부대관리훈령 제 256 조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국방부는 국제앰네스티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까지 ‘동성애자’ 군인에 대해 격리조치를 취한 부대나 그린캠프 입소 또는 병원 입원을 통해 격리시킨 사례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⁹⁰

한국의 게이 남성에게 있어 성적지향을 숨기는 것은 군대 내는 물론 군대 밖에서도 여전히 흔한 일이다. 그러나 단체생활을 하며 사생활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군대 환경에서, 진짜 자신을 숨긴 채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경험은 이와 맞지 않는 이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위 ‘그린캠프’ 혹은 ‘힐링캠프’라고 불리는 군대 내 정신건강 관리시설로 보내진 게이 군인 몇 명을 인터뷰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군복무를 한 게이 남성 ‘이성주’는 군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성주’는 결국 군대 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게

⁸⁹ 김귀근, “軍, 10년만에 ‘보호 관심병사’ 용어 폐기”, 연합뉴스, 2015. 2. 16, www.yna.co.kr/view/AKR20150216132800043.

⁹⁰ 국제앰네스티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2019. 5. 29.

참목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국제앰네스티

되었고 ‘그린캠프’로 보내졌다. 그는 그곳에서 보낸 6 주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가 있었던 곳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급조된 시설이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상담사가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상담사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정신과 의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린캠프에 병사는 20 명 정도 있었고 저희를 감시하는 병사가 6 명 정도 더 있었습니다. 3 주에 한 번 높은 간부들이 와서 퇴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도 아니었고 단순히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3 주에 한 번 열리는 회의에서 어느 날 간부 한 명이 제 퇴소에 찬성하려고 했습니다. 간부들은 제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더니 그런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3 주 더 있으라고 했습니다. 간부들이 정확한 정보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했습니다.”⁹¹

제람의 사례

제람은 2008 년 신병교육을 받은 후 운전병으로 배치되었다.⁹² 군대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데다 부대에서 다소 ‘여성스럽다’고 여겨진 제람은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몇몇 선임들과 부대원들은 제람을 반복해서 주무르고, 그의 목에 입을 맞추고 속옷을 끌어내렸다.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폭행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었고 결국 제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저항하기 시작하자 가해자는 제가 잠을 잘 수 없도록 불규칙적인 시간대에 야간근무를 배정했고,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수면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아프고 살이 빠졌습니다. 가해자들은 “군대여서 다행인 줄 알아라. 감옥이었으면 강간당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기절했습니다.

제가 겪는 문제가 점점 커지자 한 부사관이 와서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남자답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결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소수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게이라는 사실이 바로 다음 날부터 알려지기 시작해 곧 부대 전원이 알게

⁹¹ 국제엠네스티의 ‘이성주’ 인터뷰, 2018. 7.

⁹² 국제엠네스티의 제람 인터뷰, 2018. 7.

되었습니다. 이후 아침 점호 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대대장이 저를 지목하며 “어젯밤에는 누구를 꼬셨냐?”와 같은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관심병사’를 표시하는 노란색 스마일 라벨을 군복에 붙여야 했고, 운전병 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저는 군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 외부 접근이 제한되는 독방에서 지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당시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병원을 선택했고, 116 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자, 반항적이라고 여겨졌고, 외부에 전화를 걸거나 일주일에 한 번 바깥 공기를 쐬는 등 그 곳에서 소위 ‘특권’이라 여겨지는 기본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항우울제를 강제로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에게 ‘복무부적합’ 판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전역조치를 받을 수 있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낙인 찍히기는 싫었습니다. 입대 전까지 저는 제 삶을 잘 살아왔기에 제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은 후 저는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에서 저에 대한 2 차 전역심사를 할 때 의료 비전문가인 한 심사관은 “너는 너무 반항적이다. 너를 이 자리에서 총으로 쏘도 너의 죽음은 의문사로 덮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너희 가족이 받는 돈은 군견 사망보상금 2 백만원도 안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전역 조건으로 저희 어머니는 부당 대우를 이유로 군대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전역한 것에 대해 제가 받은 공식적인 사유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및 자아이질적 동성애로 인한 병역부적합’이었습니다.⁹³

국가에서 공식 서류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 낙인에 맞서 스스로를 증명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나를 내팽개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대 밖 사회도 군대나 다름없었습니다. 너무나 빠져나오고 싶어서 결국 외국으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⁹³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및 자아이질적 동성애, 파렉스파트너 의학용어사전(Farlex Partner Medical Dictionary), 2012, medical-dictionary.thefreedictionary.com/ego-dystonic+homosexuality.



군 간부들이 정신건강 검사에서 군인에 대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내리면 전역조치가 가능하다. 상급자들은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진단을 받으려 한다고 생각한다는 증언이 하나 이상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김여준’은 자신의 부대에 군복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성별을 전환하기 위해 호르몬요법을 받아온 부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 부하는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선임에게 도움을 구했다.⁹⁴

하지만 ‘김여준’은 군대가 “그 병사의 처지를 수용하지도, 복무부적합 판정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병사는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지만 여전히 자해를 시도했다. 결국 그는 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법적으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조치되었다.

‘김여준’의 상관은 해당 병사를 군에서 나가게 해주면 ‘우리가 자기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배신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여준’은 부대에서 해당 병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볼 때 우리는 그를 돌봐 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케어가 필요했지만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분위기가 LGBTI 를 수용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저는 다른 사람과 이 문제를 상의할 수 없었습니다.”⁹⁵

약 10 년 전에 군복무를 한 팬섹슈얼 ‘박도윤’도 군대에서 의료시설로 보내졌다. 그는 격리된 채 밤에 자해를 못하도록 침대에 묶여 있었다고 한다. ‘박도윤’은 6 개월 뒤 전역했다. ‘박도윤’은 그 이유가 일부는 자신이 “LGBTI 라는 사실, 일부는 우울증과 기타 정신질환”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다.⁹⁶

⁹⁴ 국제앰네스티의 ‘김여준’ 인터뷰, 2019. 5.

⁹⁵ 국제앰네스티의 ‘김여준’ 인터뷰, 2019. 5.

⁹⁶ 국제앰네스티의 ‘박도윤’ 인터뷰(증언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 사용), 2018. 7.

3.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 따른 LGBTI 인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⁹⁷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법은 LGBTI 를 차별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기준이 보장하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다.

3.1 평등권 및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갖는다.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한 차별금지(이하 ‘사회권규약’)는 세계인권선언 제 2 조, 한국이 비준한 자유권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금지조항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으나, 마지막에 “그 밖의 지위”라는 표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호 근거가 열려 있는 예시적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은 차별의 근거를 모두 나열한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차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예를 들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차별을 금지하면서 “그 밖의 지위”라는 포괄적 문구를 사용하는 자유권규약 제 2 조와 제 26 조가 성적지향을 포함한다고 해석해 왔다.⁹⁸ 또한 자유권규약 제 26 조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차별 없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 밖의 구속력 있는 유엔 문서들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특정 근거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추가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한국이 비준한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⁹⁷ 세계인권선언 제 1 조.

⁹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투넨 대 호주 사건 결정”, UN Doc. CCPR/C/50/D/488/92, 1992.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두 “인종, 피부색, 가문, 출신 민족 또는 종족”, “성별”, “장애” 모든 각 분야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해왔다.⁹⁹ 나아가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회원국이 트랜스젠더를 차별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 또는 전통적 가치는 이러한 의무를 회피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¹⁰⁰

유엔 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가 군대 내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을 폐지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해왔다. 여기에는 2015 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2017 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가 포함된다.¹⁰¹

그러나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6 년 군형법 제 92 조의 6 이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차별을 정당화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가사 그로 인하여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하여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 하여도 이는 앞서 살펴본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써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¹⁰²

그러나 도덕적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다른 국가들에서 반복적으로 기각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의 '소도미법'을 폐지한 2003 년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의 의무는 자신의 도덕적 규범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를 규정하는 것이다.”¹⁰³ 연방대법원은 이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동성애에 대한] 비난은 종교적 신념, 올바르고 용인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관념,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존중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⁹⁹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적 법, 관행, 폭력 행위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Discriminatory laws and practices and acts of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UN Doc. A/HRC/19/41, 제 84 항 e 호.

¹⁰⁰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요약보고서: 인권 증진 및 인간 존엄성 보장과 전통적 가치의 적용을 병행하는 우수사례에 관하여 회원국과 관련 이해당사자로부터 수집한 정보(Summary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the Human Rights Council of information from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on best practices in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values while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upholding human dignity)», UN Doc. A/HRC/24/22, 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4/Documents/A-HRC-24-22_en.pdf

¹⁰¹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대한민국», UN Doc. CCPR/C/KOR/CO/4, 2015;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 대한민국», UN Doc. CAT/C/KOR/CO/3-5, 2017;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대한민국», UN Doc. E/C.12/KOR/CO/4, 2017;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보고서: 대한민국», UN Doc. A/HRC/37/11, 2017.

¹⁰²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12 헌바 258, 2016. 7. 28.

¹⁰³ 미국 연방대법원,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판결, 539 U.S. 558, 2003.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심오하고 깊은 신념으로, 자신이 따르고자 하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윤리적, 도덕적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사항은 우리가 마주한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 문제의 핵심은 다수가 형법의 집행을 통해 이러한 견해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는 데 국가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¹⁰⁴

유럽인권재판소는 1999 년 영국 해군 내의 동성애자에 관한 ‘스미스 및 그레이디 대 영국’ 사건 판결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러한 태도는 진정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와는 별개로 동성애자에 대한 정형화된 적대적 표현부터 동성애자 동료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불편함의 표현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표현이 소수의 동성애자에 대해 다수 이성애자가 가진 편향을 드러내는 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인종, 출신, 피부색 등이 다른 이들에 대한 유사한 부정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위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¹⁰⁵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 20 호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한다. 동 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인터섹스는 학교 혹은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당하는 등 자주 극심한 인권 침해에 시달린다”고 밝혔다.¹⁰⁶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는 회원국에 LGBTI 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을 해소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회원국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법, 정책, 사업 등이 차별적이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회원국은 민간 행위자 등에 의한 차별적 관행을 없애고, 실질적 또는 사실상의 차별에 기여하는 조건 및 태도를 방지, 약화,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3.2 사생활권

국가는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부의 감시나 통제 없는 합의된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성적 행위 혹은 성별 표현을 처벌하거나 사생활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된다. 이러한 사생활 침해는 법 앞에 평등할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 다른 인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¹⁰⁴ 미국 연방대법원,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 판결, 539 U.S. 558, 2003.

¹⁰⁵ 유럽 인권재판소, ‘스미스 및 그레이디 대 영국’ 사건 판결, 29 EHRR 493, 2000.

¹⁰⁶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 20 호”, 제 32 항.

참목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1992 년 ‘투넨 대 호주’ 사건 당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에 의거하여 “성인 간 합의에 의한 사적인 성적 행위는 사생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은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그 존재만으로도 개인의 사생활을 직접, 지속적으로 침해한다.¹⁰⁷ ‘투넨 대 호주’ 사건 이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기타 조약기구 및 특별절차는 성인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을 개정하라고 반복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그러한 법의 폐지를 환영해왔다.¹⁰⁸

3.3 신체적 및 정신적 불가침성에 대한 권리와 자기결정권

법률가, 학자, NGO 활동가, 기타 전문가들이 2006 년 수립한 요그야카르타 원칙은 기존 국제인권법 내 성별정체성 및 성별 표현과 관련된 권리를 기술한 문서다. 제 1 원칙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다양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 모두는 모든 인권을 완전하게 향유할 자격이 있다.”¹⁰⁹ 요그야카르타 제 3 원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개인이 스스로 규정한 성적지향과 각 개인의 성별정체성은 인격의 일부이며, 자기결정, 존엄,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다. 자유권규약 제 16 조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15 조는 법적 인정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공인 신분증을 취득할 수 없을 경우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¹¹⁰

또한 ‘요그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이하 ‘YP+10’)의 제 31 원칙에 따라 국가는 법적 인정을 받을 권리를 위해 “개인이 스스로 결정한 성별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신속성, 투명성, 접근가능성을 갖춘 절차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¹¹¹ YP+10 의 제 32 원칙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 표현, 성징과 무관하게 모두가 신체적, 정신적 불가침성에 대한 권리, 자율권, 자기결정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¹⁰⁷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투넨 대 호주 사건’ 결정, UN Doc. CCPR/C/50/D/488/92, 1992.

¹⁰⁸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적 법, 관행, 폭력 행위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Discriminatory laws and practices and acts of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UN Doc. A/HRC/19/41;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유엔신탁기금의 활동에 대한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유엔기구 보고서(Report of the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on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Trust Fund in Support of Actions to Eliminate Violence against Women)», UN Doc. A/HRC/29/23.

¹⁰⁹ 요그야카르타 제 1 원칙. <https://yogyakartaprinciples.org/>.

¹¹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정부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접수하지 않은 몇몇 사례가 제 16 조를 위반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사례는 다음을 참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알바니아에 대한 최종견해”, UN Doc. CCPR/CO/82/ALB, 2004, 제 17 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대한 최종견해”, UN Doc. CCPR/C/BIH/CO/1, 2006, 제 2 항;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최종견해”, UN Doc. CCPR/C/COD/CO/3, 2006, 제 25 항.

¹¹¹ 요그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 제 31 원칙. 요그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 표현, 성징 관련 국제인권법의 적용에 대한 추가 원칙과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여 요그야카르타 원칙을 보완한다.

참목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따라 신속하고 접근가능하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성별정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4 건강권

사회권규약 제 12 조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보건 시설, 제품,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비용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 혐오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¹¹²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는 병리화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건강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많은 사람들은 서비스에 접근하고 자신의 정신건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진단의 범주들이 유익하다고 보지만, 그러한 범주들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은 인간의 고통을 치료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는 등 정체성과 여러 다양성을 병리화하는 데 오용되어 왔다.”¹¹³

정신질환 진단에 수반되는 낙인은 트랜스젠더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제 11 차 개정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최신판에서는 기존의 ‘성주체성장애’라는 진단 범주가 ‘청소년기와 성년기의 성별불일치’로 대체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기존의 ‘정신·행동 장애’가 아니라 ‘성적 건강 관련 상태’라는 제목의 새로운 장애 포함될 것이다. ICD-11 은 세계보건총회 채택을 거쳐 2022 년 1 월 1 일에 발효된다.¹¹⁴ 세계보건기구는 이처럼 ‘성별불일치’를 정신질환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트랜스젠더가 겪는 심각한 낙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¹¹⁵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건강권을 누리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는 보건의료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차별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조장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접근권을 저해할 수 있다.¹¹⁶ 보건의료 종사자의 차별대우, 그리고 사생활 및 사적 비밀이 보호되지

¹¹² 사회권규약위원회, “성· 재생산 건강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 22 호(General Comment No. 22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UN Doc. E/C.12/GC/22, 2016, 제 12 항 및 제 23 항.

¹¹³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5/21, 제 48 항.

¹¹⁴ ICD-11 의 ‘정신건강’ 범주에서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는 삭제된다. 세계보건기구, “ICD-11: 우리의 삶과 죽음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질병 분류(Classifying disease to map the way we live and die)”, 2018. 6. 18, www.who.int/health-topics/international-classification-of-diseases.

¹¹⁵ 세계보건기구, “ICD-11: 우리의 삶과 죽음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질병 분류(Classifying disease to map the way we live and die)”, 2018. 6. 18, www.who.int/health-topics/international-classification-of-diseases.

¹¹⁶ 국제앰네스티, 「몸의 정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의 범죄화에 관한 입문서(Body Politics: A primer on criminalization of sexuality and reproduction)」, Index : POL 40/7763/2018, 65 쪽.

참고 문헌

한국 군대의 LGBTI

않는 보건의료환경은 모두 LGBTI 의 ‘아웃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치료 지연의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

의료적 학대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요그야카르타 제 18 원칙은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의료적 또는 심리적 치료나 시술, 검진을 강제로 당하거나 의료시설에 감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은 질병이 아니며, "치료, 교정 또는 억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3.5 성과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타파할 국가의 의무

동성 간 성관계의 범죄화는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편견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혐오범죄, 경찰의 학대, 고문, 가족에 의한 폭력 등에 노출시킨다.¹¹⁷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는 편견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5 조 a 항은 회원국이 “어느 하나의 성이 열등하거나 우월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된 성역할에 따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 고정관념의 형성을 타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동 협약에 의한 보호와 국가의 의무는 시스젠더 여성(출생 시 부여된 성과 현재 자신을 규정하는 성별이 모두 여성인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겪는 트랜스젠더 여성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왔다.

또한 동성 간 성관계의 범죄화는 전통적 성별 규범에 도전하는 복장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을 강화한다. 전세계 곳곳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 및 트랜스젠더 혐오는 각국 정부가 폭력과 차별로부터 LGBTI 를 보호할 법적 의무를 더욱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¹¹⁷ 국제앰네스티, 「몸의 정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의 범죄화에 관한 입문서(Body Politics: A primer on criminalization of sexuality and reproduction)」, Index : POL 40/7763/2018, 66 쪽.

4. 결론 및 권고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 보장을 위해 부대관리훈령 내에 관련 조치가 마련되었으나, 제 92 조의 6 으로 인해 동성애자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가 여전히 부정당합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이종걸

한국의 군형법은 한국이 서명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의무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군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 차별, 낙인을 강화한다. 군대 내의 범죄화는 실제 또는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적지향이나 성적 행위에 대한 소문을 근거로 한 괴롭힘, 학대, 폭력의 발생에 기여한다.

남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법은 차별을 제도화하여 군대는 물론 사회와 가정에서 게이 남성, 양성애자 남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에 대한 체계적 편견을 강화한다. 한국의 군형법은 부대 내인지, 근무시간 중인지와 무관하게 남성 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군인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용인한다.

또한 군형법은 게이, 양성애자, 그 외 성별 규범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사랑, 연애,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추구할 자유를 부정한다. 경우에 따라 이 법으로 인해 트랜스젠더나 인터섹스, 혹은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들은 범죄화나 편견, 차별에 직면한다.

비범죄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LGBTI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LGBTI 활동가 ‘다노’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법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¹¹⁸

¹¹⁸ 국제앰네스티의 ‘다노’ 인터뷰(증언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 사용), 2018. 6.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보편적 인권 보호에 예외는 용납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그리고(또는) 성징에 근거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회에 대한 권고

-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 92 조의 6 을 폐지할 것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이스탄불협약)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 35 호에 부합하는 ‘강간’의 정의를 법률에 도입할 것. 또한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고 ‘강간’의 정의를 수정할 것
-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 커플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것

국방부에 대한 권고

-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이유로 군인들을 조사, 구금, 기소하는 행위를 즉시 무조건 중단할 것
- 동성 간 성적 행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 기소, 군 복무부적합판정 등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 군대 내 LGBTI 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온당한 재판 회부 등의 책임을 물을 것
- 성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 군대 내의 학대를 금지 및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또한 그러한 학대 혐의 모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부대관리훈령 내 차별금지조항의 인지와 시행을 위해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 징집, 진급, 전역 등 군복무의 모든 영역에 차별금지조치를 적용하도록 보장할 것

법무부에 대한 권고

- 민족, 성별, 실재 혹은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차별, 적대,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옹호행위와 폭력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할 것
- 경찰, 검찰, 판사, 법원 직원 등 모든 직급의 공직자에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의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행정부에 대한 권고

- 성별정정 시 정신과진단, 강제적인 불임시술이나 성기재건술과 같은 의학적 치료, 혼인하지 않은 상태나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과 같은 폭력적, 차별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 또한 성별정정이 개인의 자기선언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접근 가능하며 투명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것
- 학교 내 인권교육시 LGBTI 를 포용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이유에 따른 차별금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
- LGBTI 를 포함해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폭력을 수사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것. 모든 군인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비밀과 안전이 보장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수사관의 권한과 접근을 보장할 것
- 성별불일치를 더 이상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지 않는 세계보건기구 「제 11 차 개정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를 지체 없이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성별불일치를 정신질환으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할 것
-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모든 성별적합치료를 포함시킬 것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적인
인권운동조직입니다.
한 사람이 겪는 불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연락처



issue@amnesty.or.kr



(02) 730-4755

소셜네트워크



www.facebook.com/AmnestyKorea



@AmnestyKorea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한국에서 민간인에 대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은 남성 간의 성적 행위를 최대 징역 2년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은 특정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군형법은 차별을 제도화하고,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체계적 불이익을 강화하며, 군대 안과 사회 전체에서 이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 또는 정당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의 범죄화로 인한 직간접적 결과로 군인들이 어떤 차별, 위협, 폭력, 고립을 겪는지 보여준다. 또한 군대 내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이 억압되고, 이로 인해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이들이 고통을 겪는 과정을 상세히 밝힌다. 한국 정부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함으로써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비범죄화로 차별과 학대가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한국 군대 및 사회 전체에서 LGBTI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문서번호: ASA 25/0529/2019

2019년 7월

원문언어: 영어

amnesty.org
amnesty.or.kr

AMNESTY
INTERNATIONAL

